

EU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과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s and Issues of the European Union on Electronic Commerce

박복재(Bok-jae Park)

여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EU 입법에 따른 한국의 법·제도적 대응전략 |
| II.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 V. 결론 |
| III.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쟁점 | 참고문헌 |

Abstract

The European Union(EU) has enacted a series of directives including the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and started harmonizing the national laws in this area. As a result of this effort, Electronic Commerce has been vitalized as a part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This article would be helpful to analyze the new legislations of the EU and to show their essentials as securing free movement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Commerce in the community.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be useful to draw up a plan of South Korea Legislations on Electronic Commerce.

Key Words: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Signature, EU

* 본 연구는 여수대학교 2003년 학술연구과제 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국가간 무역이 촉진되고 거래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업은 현재 생산과 시장의 측면에서 글로벌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보다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무역정책수립 및 집행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무역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방법에 있어 법률적, 현실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관련 국가 법제의 상위에 따른 적법·유효성의 문제에서부터 법의 저촉, 거래안전의 보호, 국가주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청약, 승낙, 계약성립의 시기·장소 등에 관한 문제 및 전자서류의 방식 요건에 관한 문제,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에 따르는 통관, 조세, 거래이행에서의 분류 및 소비자 보호, 통신보안 및 대금결제, 자금이체의 안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전자상거래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으로는 규율할 수 없고 국제적인 협조가 요청되므로 국제 규범화 작업이 UNCITRAL 및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 이하 EU) 등 선진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다자간 규범체정을 위하여 저마다 기본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EU에서도 1997년 「본 선언」을 채택한 이래, 전자상거래는 EU의 무역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EU는 단일한 전자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EU 역내시장은 물론이고 EU 역외시장까지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EU는 역내에서의 공통적인 법적 틀을 만들기 위하여 EU 입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지침」¹⁾의 제정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의 법적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다.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이러한 추세를 볼 때,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던 한국으로서는 인터넷라운드의 다자간 국제규범 제정논의에는 적극 참여함은 물론 이들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EU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 「원거리 판매에 관한 지침」 및 「전자서명에 관한 지침」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EU 입법의 주요사항과 쟁점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에 있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Corinna Schulze & Jeffrey Baumgartner, "Don't Panic! Do E-commerce : A Beginner's Guide to European Law Affecting E-commerce," European Commission's Electronic Commerce Team, 2000, p.15.

II.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1.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

1) 유럽의회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의 승인

2000년 5월 4일 유럽의회는 EU 회원국들이 향후 18개월 내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하는 이른바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을 승인했다.

이 지침의 정식명칭은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혹은 법적 측면에 관한 2000년 6월 8일 부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이다. 이 지침은 65항의 전문과 4장 24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의 목적은 회원국들 사이에 정보사회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는 본거지에 있는 가맹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있는 한, 그 서비스를 EU 전역에 제공할 수가 있다.²⁾

본 지침은 2000년 7월 17일자로 유럽 공동체 공보에 공시되어 제 23조에 의해 동일 발효되었다. 가맹국은 이 지침의 경우에는 제 22조에 의해 공보에 의한 공시로부터 18개월 후인 2002년 1월 17일까지 각국내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다.

지침은 기업 간(B2B) 및 기업과 소비자 간(B2C)의 모든 정보사회서비스, 광고 또는 스폰서의 자금에 의해 수령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물품과 서비스의 쌍방향 컴퓨터에 의한 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센터 등 인터넷으로 전자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에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분야를 열거하면, 인터넷신문, 데이터 베이스, 금융서비스, 직업적 서비스(변호사, 의사, 회계사, 부동산 관리인 등, 요구에 응해서 비디오를 제공하는 등의 오락서비스, 다이렉트·마케팅·광고, 월드와이드웹에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지침은 EU 내에서 설립된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고 EU 외에서 설립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침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법적 발전과 모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는 지침은 국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규범의 발전에 있어서 유럽의 영향을 강화시키고 있다.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범은 업계의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부분에서는 유럽위원회의 직접적인 규제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미국과 비교하여 다소 제한적인 자유화의 입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³⁾

아래에서는 지침의 요점에 관해서 주로 유럽 홈페이지의 해설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⁴⁾

2) *ibid.*, p.15.

3) 박노형,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동향과 내용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0.12, p.64.

4) European Commission, *Electronic Commerce : Commission welcomes final adoptions of legal framework Directive 3, 2000*, www://europa.eu.int/comm/internal-market/

2) 설립 · 감독 · 투명성

지침은 서비스 제공자의 설립 장소를 운영자 실제의 고정시설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C)). 웹 서비스나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운영자가 어디에 우편주소를 갖고 있는지는 관계가 없다. 이 정의는 EC 조약에 의해서 확립된 원칙 및 유럽 법원의 판례에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해서 종래 법적인 애매함이 제거되고 운영자는 설립된 가맹국의 감독에게 복종해야 하므로 확실히 감독을 받게 되었다.

지침은 가맹국이 다른 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동일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 특별 인가제도를 정보사회서비스에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4조).

지침은 또 가맹국이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들의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명칭, 주소, 전자우편주소, 영업등록 번호, 직업인가, 부가가치세 번호 등)를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고 영구적인 형태로 고객과 관할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제5조).

3) 전자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조약

지침은 가맹국에 대해서 그 법률제도가 계약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성립을 인정할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특히 가맹국은 계약과정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전자계약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고, 또한 관련된 계약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체결되기 때문에 법적효과 및 유효성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장 되어있다.

단, 가맹국은 다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 외로 할 수가 있다(동조2항). 이 경우에는 가입국은 유럽위원회에 대해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할지 연락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동조 3항).

첫째, 임차권을 제외한 부동산에서 권리를 창조하거나 이전하는 계약

둘째, 법률에 의해 법원, 공적기관 또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전문가의 참가를 요하는 계약

셋째, 직업 외의 목적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 제공되는 보증 또는 담보증권에 관한 계약

넷째, 친족법 또는 상속법에 의해 지배되는 계약.

4) 중개자의 책임

현재의 법적 애매함을 제거하고 가맹국간의 서로 다른 접근을 피하기 위해 지침은 중개자가 제3자로부터 정보의 「단순한 연결고리(mere conduit)」로서 수동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우, 중개자의 책임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또, 정보보관 등의 그 밖의 「중개자적」 활동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4조). 지침은 다른 당사자간의 협력을 환기하기 위해, 관계당사자의 이해를 주의 깊게 조정하고, 인터넷상의 위법행위의 위험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제 15조).

5) 상업통신

지침 제2조 (f)는 상업통신(commercial communication)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품, 서비스 판매를 촉진하고 또는 상업적, 공업적 혹은 공예적 활동을 추구하고, 또는 규제 하에 있는 직업에 관계되는 회사, 조직 혹은 사람의 이미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식의 통신」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광고나 직접마케팅은 그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침은 이와 같은 상업통신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와 공정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침은 소비자가 유해한 강요에 대해 한층 쉽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에 의한 상업통신은 누가 행하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6조). 나아가 변호사, 회계사 등의 규제 하에 있는 직업에 대해서 지침은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고, 광고에 관한 국가 규칙은 이러한 직업에 있는 어느 사람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일반원칙을 정함과 동시에, 이것은 직업단체에 의해서 기초된 행동기준에 반영되고 있다. 직업윤리에 관한 일정 규칙을 존중해서 행해야만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6) 집행

지침은 현재 EU 및 가맹국의 입법이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에는 EU 수준에서의 행동기준 발전을 촉진할 것(제16조), 가맹국간의 행정적 협력을 장려할 것(제 19조) 및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 거래에 의한 분쟁의 효과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확립을 용이하게 할 것(제17조)이 포함된다. 지침은 또 가맹국이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부여할 것(제18조) 및 지침 하에서 확립된 규칙 위반에 대한 제제가 효과적이고 지나침이 없이 제지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0조).

7) 국가법의 상호승인과 일부수정

지침은 국가법 상호승인에 관해서 역내 시장의 원칙(the internal market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of national law)과 起源國의 원칙(the principle of the country of original)이 정보사회에도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가맹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다른 가맹국에서 제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제3조 2항).

그러나 가맹국은 지침 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근거로 하는 공익, 개인에 관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 공중의 건강과 안전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포함한 소비자의 보호, 인종, 성별, 종교 또는 국적을 근거로 하는 증오에 대한 싸움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가맹국에서 공급되는 정보사회서비스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제3조 4항).

이러한 제한은 이미 정해 놓은 목적에 비추어 지나쳐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러한 제한은(간

급한 경우 및 법원의 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되어있는 가맹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게을리 하고 나아가 제한을 가하는 의도가 사전에 유럽위원회 및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되어 있는 가맹국에 통지된 후에만 가할 수 있다.

긴급 및 준비절차와 형사수사를 포함한 법원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제한(또는 긴급성)의 이유는 유럽위원회와 서비스 제공자의 가맹국에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실제 제한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가맹국은 관련 제한을 가하는 것을 미루거나 긴급히 제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제3조 4-6항).

8) 관할권과 준거법

지침은 민사 및 상사사항에 관해서 관할권과 판결승인, 집행에 관한 브뤼셀 조약 적용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지침은 소비자계약에서의 계약상 의무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로마조약 또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하는 당사자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지침 제1조 4항은 「지침은 국제사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칙을 확립하고 있지 않고 또 법원의 관할권을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EU 에는 관할권에 관해서는 1968년 브뤼셀 조약이, 또한 준거법에 관해서는 1980년 로마조약이 존재한다.

먼저 브뤼셀 조약은 정식명칭을 「관할권과 민사 및 상사사항에서 판결의 집행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이라고 하고, 1968년 9월27일에 성립되었다. 브뤼셀 조약 체결국은 당초 EEC를 구성하고 있었던 6개국 즉, 벨기에·독일·프랑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와 영국·덴마크의 합계 8개국이다. 후에 브뤼셀 조약의 기본적인 의무는 EU에 남아 있는 멤버로 오스트리아,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및 스위스를 포함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자유무역연합) 제국에 확대되었다. 이것이 1988년 9월 16일에 성립된 루가노 조약이다.

브뤼셀 조약은 대부분 민사·상사사항에 적용되므로 인터넷에 의한 상거래시에도 적용된다.

브뤼셀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론으로서는 관할권의 결정은 상당히 단순화된다. 계약에 관할권 조항이 없는 한, 관할권은 통상, 피고 주소지의 법원에 부여된다. 피고는 본국 주소지에서만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 피고 주소지의 일반원칙에는 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고, 중요한 예외 중 하나가 소비자계약의 경우이다. 즉, 이 조약의 제 14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피고인 매도인을 피고 주소지에서도, 자기 주소지에서도 소송할 수가 있다. 소비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생각한 규정이다.⁵⁾ 이 규정은 계약 관할권 조항에 따라 변경할 수 없다.⁶⁾

한편, 로마조약은 정식명칭을 「계약상의 의무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5) Michael Chissick & Alistair Kelman, *Electronic Commerce : Law and Practice*, Sweet & Maxwell, London, 2000, pp.107-108.

6) *ibid.*, p.113.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이라고 하고, 1980년 6월 19일에 성립된 EU 가맹국간의 다국간 조약이다. 로마조약은 원칙으로서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해서 당사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동조약 제3조). 그러나 소비자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는 계약상의 준거법 선택조항에 따라 소비자가 살고 있는 나라의 강행규정이 부여되고 있는 보호를 빼앗기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비자 보호의 강행규정에는 표준서식계약의 강행가능성의 제한, 냉각기간 중의 해약의 권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인에게 적용되는 강제적 정보개시 또는 상품보증의 규칙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① 상인으로부터의 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권유가 소비자의 나라에서 수취된 것.
- ②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소비자의 나라에서 주문을 받은 것 또는
- ③ 매도인이, 물품구입을 위해서 소비자가 매도인의 국가로 여행하는 것을 수배하고 또는 권유한 것.

로마조약과 브뤼셀 조약의 양 규정을 결부시켜 분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원과 법률 하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소비자가 피고로 거래에 있어서 수동적이었을 경우, 즉, 소비자가 자택에서 상인과 접촉한 경우, 또는 상인의 대리인과 거래하게 되어, 거주하는 나라에서 주문할 기회를 부여받을 경우에는 명백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고로, 거래에 있어서 능동적이었을 경우, 예를 들면, 상인의 영업지에 여행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상인에게 유리한 법원 또는 법률 하에서의 소송을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⁷⁾

9) 분쟁해결

유럽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서 가맹국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조화, 소비자계약에서의 법률 선택 및 중재조항의 강행가능성의 제한 및 전통적인 소송에 대한 대체 수단의 사용을 장려하는 함으로써 분쟁해결 비용의 삭감에 몰두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단순하거나 하찮은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사법의 네트워크(European Extra-Judicial Network ; EEJNET)」의 창설을 고려하고 있다.⁸⁾ EU의 고객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은 매도인은 다음의 2가지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⁹⁾

첫째, 역외의 법률 및 법원 선택을 정한 조항은 EU에서는 소비자에게 강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7) Jane K. Winn & Benjamin Wright, *Law of Electronic Commerce, Aspen Law & Business*, 2001, pp.6-33.

8) May 2000 Commission Working Document on the creation of and European Extra-Judicial Network (EEJ-NET), available at http://europa.eu.int/comm/consumers/policy/developments/acce_just/acce_just06_en.pdf

9) Jane K. Winn & Benjamin Wright, *op.cit.*, pp.6-38.

둘째, EU는 최근 소비자 보호법을 쇄신하여, 종전의 거래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

2. 원거리 판매에 관한 지침¹⁰⁾

EU에는 상술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 이외에도 몇 개의 전자상거래 관련 지침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지침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원거리판매에 관한 지침과 전자서명에 관한 지침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997년 EU는 「원거리 계약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을 채용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원거리 판매에 관한 지침(Distance Selling Directive ; DS Directive)」이다. 본 지침은 1997년 6월 4일부로 EU 공보에 게재되고, 동일 발효되어, 가맹국은 2000년 6월 4일까지 국내법을 제정하게 되었다(제15조). 이하에서는 이 지침의 주된 요점에 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정의] (제2조)

여기에서 말하는 원거리 계약이라는 것은 공급자에 의해 행해지는 조직적인 원거리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의 틀 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계약이지만 공급자는 그 계약을 위해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한 가지 이상의 원거리 통신 수단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조(1)) 원거리 통신수단이라는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계약체결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라면 무엇이든 좋지만 지침의 부속 문서 I의 예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2조(4)) 「원거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직접 면담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수신인 이름이 없는 인쇄물
- 수신인 이름이 있는 인쇄물
- 표준적인 편지
- 정기 간행물의 주문서식이 첨부된 광고
- 카탈로그
- 사람이 개입하는 전화
-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전화(자동응답기, 오디오 텍스트)
- 라디오
- 텔레비전 전화 (화면이 있는 전화)
- 키보드 또는 터치 화면이 있는 비디오 텍스트 (마이크로컴퓨터와 텔레비전 화면)

10) Press Release IP/97/495 of 5.6.97, http://europa.eu.int/comm/consumers/policy/development/dist_sell/dist02_en.html

- 전자우편
- 팩시밀리 기계
- 텔레비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전자우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른바 다이렉트 마케팅의 대부분의 수법이 포함된다. 인터넷 웹 화면을 이용한 계약도 당연히 포함된다.

본 지침은 이러한 원거리 통신 수단을 이용한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설치하고 있다.

[계약에 앞서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제 4조)

먼저 소비자는 계약체결에 앞서서 다음 사항에 관해서 명료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a) 공급자의 신원 및 선불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주소
- (b) 물품 또는 서비스의 주된 특징
- (c) 제금을 포함한 물품 또는 서비스 가격
- (d) 인도의 비용
- (e) 지불, 인도, 또는 이행의 수배
- (f) 취소 권리의 존재
- (g) 원거리통신수단을 사용하는 비용
- (h) 신청 또는 가격이 유효한 기간
- (i) 영구히 또는 반복해서 이행되는 계약인 경우 최단 계약기간

이들의 정보는 상거래에서 선의의 원칙과 미성년자 등의 동의를 부여할 수 없는 자의 보호를 정한 원칙에 합치한 것이어야만 한다. 전화의 경우에는 전화하는 자의 신원과 상업적인 목적은 최초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서면에 의한 정보의 확인](제5조)

또한 소비자는 계약이행기간 중의 적당한 시기에 또한 제 3자에게 인도되지 않는 물품에 관해서는 늦어도 인도할 때 상술한 (a)에서 (f)까지의 정보에 대해서 서면 그 외의 영속성이 있는 수단에 의한 확인을 수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들의 정보가 계약 전에 서면 그밖에 영속성이 있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인도되면 별개이다. 그리고 다음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취소권리의 행사에 관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서면에 의한 정보
-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신처로 할 수 있는 공급자의 영업지의 지리적인 주소
- 판매 후의 서비스와 존재하는 보증에 관한 정보
- 계약해제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가 또는 일년 이상에 걸친 경우 그 종료시기

[취소권리] (제6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냉각기간의 문제이

다. 소비자는 적어도 7 근무일의 기간 중에 벌금 없이,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품반환의 직접적인 비용뿐이다. 그러나 공급자가 앞에서 말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 된다.

[주문의 이행] (제7조)

한편, 당사자가 별 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최장 30일 이내에 주문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그 내용의 연락을 받고 지불이 끝난 금액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어떠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반환해야만 한다.

[신용카드의 사기적인 사용] (제8조)

또 가맹국은 소비자의 신용카드가 본 지침이 적용되는 원거리 계약에 관해 사기적으로 사용된 경우 소비자가 지불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조치가 존재하는 것을 보증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다.

[강요판매의 금지] (제9조)

나아가 본 지침은 강요판매(*inertia selling*)를 금지하고 있다. 즉 가맹국은 관련된 공급이 지불요구를 수반한 경우, 사전에 소비자의 주문 없이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외 없는 공급의 경우에 어떠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부터 소비자를 면제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답을 하지 않아도 동의가 되지 않는다.

[예약 없는 판매 활동의 금지] (제10조)

본 지침은 일부 원거리 통신 수단의 공급자에 의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즉, 사람의 개입이 없는 자동응답장치와 팩스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예약 없는 판매 활동을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 본 지침은 그 밖의 수단도 소비자로부터 명확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해야만 한다고 가맹국에 요구하고 있다.

[사법 또는 행정에 의한 구제] (제11조)

가맹국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침이 준수되도록,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의 존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수단에는 다음 기관 중 한 개 이상이 본 지침의 실행을 위한 국내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 또는 관계 행정당국에서 국내법에 입각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된다.

- (a) 공공기관 또는 그 대리인
- (b)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소비자 단체
- (c) 행동하는 것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직업단체

가맹국은 사전정보, 서면에 의한 확인, 기한의 준수 또는 소비자의 동의에 관한 증거 책임을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취지를 규정할 수 있다.

[권리포기의 금지] (제12조)

소비자는 본 지침의 국내법으로의 이전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 공급자가 비 가맹국에 있는 경우, 그 나라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면, 소비자는 본 지침에 의한 보호를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가맹국은 소비자 국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지침은 원거리 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단히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제15조 3항에서 발효 후 4년 이내에 즉 2001년 6월 4일까지 유럽 위원회는 유럽회의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가맹국의 실행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본 지침은 금융서비스, 부동산판매, 경매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보제공, 취소권리 및 이행기간에 관한 규정은 매일 소비를 위해 가정에 공급되는 음식물의 공급계약과 숙박설비, 수송, 여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3. 전자서명에 관한 지침¹¹⁾

EU는 1997년에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체 틀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을 채용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전자서명에 관한 지침(Electronic Signature Directive ; ES Directive)」이다. 이 지침은 2000년 4월 19일자로 EU 공보에 게재되어서 동일 발효 되고, 가맹국은 2001년 7월 19일까지 국내법을 제정하게 되었다(제13조).

전자서명은 예를 들면, 인터넷과 같은 전자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수령하는 자가 데이터 발신자를 특정하고, 또한 데이터가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본 지침에서는 전자서명은 다른 전자적 데이터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또한 인증방법으로서 역할을 부과하는 전자적 형식의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제2조1항).

이 정의는 암호기술을 구사하는 이른바 디지털 서명보다 넓은 정의이다. 이것은 후술하는 것처럼 본 지침이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중립적인 접근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 지침은 모든 것을 상세히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역내시장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전자서명 증명서와 증명 서비스의 요건을 정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지침의 주된 요점에 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법적 승인] (제5조)

본 지침은 전자서명은 오로지 전자적인 형식을 취한다고 하는 이유로 법적으로 차별될 수

11) Commission welcomes new legal framework to guarantee security of electronic signature, 30 November 1999,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media/sign/99-915.htm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증명서 및 증명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면 전자서명은 손으로 쓴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전자서명은 법적인 절차에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자유로운 유통] (제3조·제4조)

전자서명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는 원산국에 따른 입법·규제에 따를 뿐이고 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가맹국은 전자서명에 관한 서비스 제공에 허가제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책임] (제6조)

본 지침의 주된 목적의 하나는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소비자 보호이다. 따라서 본 지침은 증명서비스 제공자의 최저 한도의 책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증명서비스 제공자는 특히 증명서 내용의 정확성에 관해서 책임을 진다. 이 접근은 역내시장에서의 증명서와 증명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증하고 소비자 신뢰를 쌓고 또한, 운영자가 제한적이고 유연성 없는 규제 없이 안전한 시스템과 서명을 발전시키는 것을 자극한다고 유럽 위원회는 생각하고 있다. 본 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증명서를 적격 증명서로 대중에게 보증함으로써, 증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그 증명서에 합리적으로 의존한 법인 또는 자연인이 입은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진다.¹²⁾

- (a) 적격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발행할 때의 정확성 및 그 증명서가 적격증명서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모든 명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 (b)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 적격 증명서에 특정되어져 있는 서명자가 증명서에 부여되거나 특정되어 있는 서명 인증 데이터에 대응하는 서명창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증에 관하여
- (c) 서명창조 데이터와 서명 인증 데이터는 증명서비스 제공자가 쌍방을 발행 할 경우에는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보증에 관해서

단, 증명서비스 제공자가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증명서비스 제공자는 증명서 취소의 등록을 태만히 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그러나 증명서비스 제공자는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서 증명서의 사용에 관하여, 용도에 관해서 또는 금액적으로 제한을 둘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명서비스 제공자는 제한을 초과한 사용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술에 중립적인 구조] (전문 8항)

문서에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방법은 대단히 단순한 것(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서에 손으로 직접 쓴 서명의 이미지를 스캔해서 삽입하는 방법)으로부터 암호기술은 사용한 고차원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상태에서는 공개키암호 기술에 기초한 디지

12) 적격증명서 및 그 것을 발행하는 증명서비스 제공자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 전자서명에 관한 지침의 부속서류 I 과 II에 각각 정해져 있다.

털 서명이 전자서명에서 가장 평가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본 지침은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인증한 기술에 관한 한, 「중립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 접근은 급속한 기술의 진보와 인터넷의 지구적인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¹³⁾

[적용범위]

본 지침은 전자 메시지 발신자의 특정을 목적으로 대중에 대한 증명서 발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은행시스템 등의 사법상 합의에 따라 지배된 구조의 운영은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이미 존재해 있고 규제의 확실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본 지침은 오로지 폐쇄(closed) 시스템 안에서 채택된 전자서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¹⁵⁾

[국제적인 측면] (제7조)

전자상거래에서의 지구규모의 시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본 지침은 증명서의 상호승인을 토대로 하고 또한 두 나라 및 다 국가 협정에 입각해서 제3국가와의 협력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술해 온 전자서명에 관한 지침의 주요 특징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증명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증명서 내용의 정확성에 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 것은 본 지침이 인터넷을 사용해 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이지만 유타주의 디지털 서명법 등 미국의 법률에서 볼 수 있는 책임의 표준보다 훨씬 높다. 유타주의 경우, 증명서를 발행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증명서 실무를 서술한 서류에 따르는 것을 요구받는 것만으로, 증명서에 포함된 사실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의무는 발행자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발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¹⁶⁾ 이 유럽과 미국의 차이는 앞으로 전자서명이 보급됨에 따라서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만약 EU의 증명 서비스업자가 이와 같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면 EU의 전자상거래 관계자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¹⁷⁾

III.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쟁점

1. 조세 및 관세

EU는 조세의 문제를 회원국간 부가가치세의 공동체제에 관한 1977년 VAT지침을 기초로 발

13) *Political agreement on a common position of the council on a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22 April 1999), at1-2,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media/sign/composen.htm

14) Schulze & Baumgartner, op.cit., p.3.

15) *ibid.*,

16) Jane K. Winn & Benjamin Wright, op.cit., pp.5-57.

17) *ibid.*, pp.6-37.

전시켜 왔다. 이 지침은 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고, 1998년 6월 유럽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간접세에 관한 통신」을 채택하였다. 동위원회는 이 통신에서 「1997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이니셔티브」에서 명확하고 중립적인 조세환경을 보장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EU는 전자상거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체제의 법적 확실성, 간소함 및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6월 7일 유럽위원회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1977년 VAT지침 수정 제안에서의 행정적 협력에 대한 1992년 규칙을 수정하는 제안을 하였다. 동 제안은 EU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라 하더라도 그 구매가 EU 역외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전자상거래와 관세의 문제에 있어서 EU는 주문, 결제, 배달이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화를 유지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관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EU는 전자상거래가 2가지 유형, 즉 주문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배달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EU는 전자의 경우에는 GATT의 범위에 포함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GATS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관세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은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후자의 경우인데, EU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온라인 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적 전송의 경우에는 이를 어떤 유형의 공급형태, 즉 상품의 전송과 서비스의 전송 중 어느 유형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것은 없다.¹⁸⁾

2. 전자서명 및 인증

전자서명에 대하여 EU에서는 1997년 유럽위원회의 「전자통신에서 보안 및 신뢰의 보장: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위한 유럽 구조(Ensuring Security and Trust in Electronic Communication:

Towards a European Framework for Digital Signatures and Encryption)」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전자서명구조는 전자서명에 대한 설명과 인증기관, 법적 문제점 및 암호화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체 수준에서의 전자서명과 암호화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1997년 전자서명구조를 바탕으로 1998년 5월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구조 지침」을 제안하였다.¹⁹⁾ 동 지침은 이후 1999년 4월 29일 유럽위원회의 수정제안과 동년 6월 28일 EU이사회의 공동입장 채택 및 11월 30일 EU통신이사회가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18) 박노형, 전제서, p.69.

19) *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a common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COM(1998) 297final, 98/0191(COD), 1998.1.3.

써 유럽에서의 전자서명에 관한 법적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동 지침은 2000년 1월 19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을 발하였다.

1999년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구조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서명’이란 첨부되어 있거나 논리적으로 다른 전자적인 데이터와 연관되어 인증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전자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루어진 서명이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과 같은 형태의 전자서명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증거로서 인정을 받는다. 또한 각 회원국은 전자서명이 단지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법적 절차에서의 증거능력이나 법적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즉, 제품에 사용된 서명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와 인증서가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서명은 손으로 쓴 서명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추정되며, 소송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책임과 관련하여 1999년 전자서명 공동구조 지침은 특히 인증서 내용의 유효성에 책임이 있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최소 책임규칙을 규정하였다. 즉,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태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각 회원국은 인증에 의존하여 발생한 법인 및 개인의 피해에 대한 인증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이 최소화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편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침은 인증서의 상호인정 및 양자 및 다자간 협정에 기초한 제3국과의 협력 장치를 권고한다.

과거에는 단지 자필 서명만이 법적으로 유효하였으나 이제는 전자서명이 1999년 전자서명 공동구조 지침을 통하여 법적으로 인정되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본국 통제(home country control)라는 내부시장 원칙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법적구조는 온라인 거래 시장이 요구하는 보호를 제공하고 새로운 세계시장에서 국제적인 경쟁에 있는 EU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 지침은 전자서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율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보호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의 인증과 인증서비스를 위한 요건을 정의하고, 이러한 인증의 내부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법적 구조를 담고 있다. 동 지침은 EU전체에서 전자서명의 인정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적 체제를 규정하며,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EU의 법적 구조의 개발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으로 평가된다.²⁰⁾

3.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에 관한 EU의 논의는 1985년 12월 20일 EC이사회가 채택한 「사업지에서 멀리 떨어져 협상된 계약에 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침」²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유럽

20) 박노형, 진계서, p.71.

21) Council Directive 85/577/EEC of 20 December 1985 to protect the consumer in respect of contracts negotiated away from business premises, OJ L372, 1985.12.31.

위원회는 1992년 4월 7일 「원거리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 규약 권고」²²⁾를 채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97년 「원거리 계약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지침」²³⁾을 채택하였다. 한편 EU이사회는 1999년 1월 19일 브뤼셀에서 소비자 문제를 주제로 열린 제 2128차 이사회 회의에서 결의²⁴⁾를 통해 정보사회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EU는 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EU 회원국 내에서 균등하게 보장하고, 이러한 정보가 통신수단에서 자유롭게 이동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통신부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지침」²⁵⁾을 채택하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EU는 1995년 10월 24일 채택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에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재까지 동 지침에 근거하여 취해진 회원국의 구체적 조치는 없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EU와 미국간에 가장 중점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 데이터 보호 작업반은 2000년 2월 3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의 이행에 관한 권고'²⁶⁾를 채택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회원국들이 가능한 빨리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다.²⁷⁾

4. 전자결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업 환경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난 몇 년간 새롭고 혁신적인 지불수단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도입되어 왔다. 이러한 양상은 EU에서 내부시장의 완성과 전자화폐발행과 관련한 규율 및 감독문제 측면에서 규범제정을 필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1998년 10월 15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전자화폐기관의 사업수행 및 신중한 감독을 위한 지침에 관한 제안(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the taking up, the pursuit and the prudential supervision of the business of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²⁸⁾을 하였다.

22) Commission Recommendation 92/295/EEC of 7 April 1992 on codes of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in respect of contracts negotiated at a distance (distance selling), OJ L 156, 1992.6.10.

23)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ing, OJ L 144, 1997.6.4.

24) The Consumer Dimension on the Information Societ, Council Resolution of 19 January 1999 adopted at the 212t Council meeting Consumer Affair, OJ C 23, 1999.1.28.

25) 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26) The Working Party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commendation 1/2000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95/46/EC, 2000.2.3.

27) 박노형, 전게서, p.74.

28) OJ, C317, 1998.10.15, pp.7-12.

「전자화폐 기관에 관한 지침」²⁹⁾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제안은 전자화폐의 발행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허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조화된 규칙을 도입하여, 특히 전자화폐기관을 위하여 단일여권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서비스에 있어서의 단일시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전자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동 지침의 규정에 부합하는 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지침을 각 회원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 규정이 효력을 갖기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자화폐 발행기관은 별도의 인증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각 회원국은 그러한 전자화폐발행기관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모든 관련 정보를 제출하게 하여 당해 기관이 본 지침에 따른 필요조건에 부응하는지를 평가할 의무를 가진다.³⁰⁾

5.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적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EU 내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된 구체적인 지침이나 행동은 없다. 다만 EU에서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다룬 지침들을 통하거나 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행동계획이나 이니셔티브 중에서 부분적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들이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³¹⁾

2000년 4월 13일 유럽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하여 EU내에서 네트워크 운영자와 관련 권리의 소유자간의 이익을 보호하는 균형적인 해결책의 이행 마련이 향후 EU의 전자상거래 법적 구조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밖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EU는 1996년 3월 11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을 채택하였고, 1991년 5월 14일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Council Directive 91/250/EEC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을 채택하여 시행 중에 있다.

6. 분쟁해결 및 관할권

2000년 5월 4일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은 전자상거래 관련 EU 및 회원국내 법률이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즉 EU수준에서 행동규약

29) Directive 200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on the taking up, the pursuit and the prudential supervision of the business of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30) 박노형, 전게서, p.75.

31) 전게서, p.76.

(codes of conduct)의 발달을 장려하고, 대안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지침은 회원국들에게 온라인 환경에 적절한 빠르고 효율적인 법적 구제를 규정하도록 요구하면서, 동시에 동 지침에 따라 규정된 규칙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 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EU에서의 분쟁해결은 대체로 전통적인 사법적 접근보다는 대체로 대안적 분쟁해결을 권장해 왔다. 이러한 대안적 분쟁해결은 최근 유럽위원회의 「e-confidence」 온라인 포럼 제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유럽위원회는 2000년 3월 30일 정보, 지식 및 경험의 교환을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로서 「e-confidence」포럼을 온라인상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EEJ-Net」 (European Extra-Judicial Network)이라는 유럽지역의 비사법적 네트워크 형성을 추구하여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³²⁾

이와 같이 EU에서의 분쟁해결은 대체로 전통적인 사법적 접근보다는 대체로 대안적 분쟁해결을 권장해 왔다. 이러한 대안적 분쟁해결은 최근 유럽위원회의 「e confidence」 온라인 포럼 제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유럽위원회는 2000년 3월 30일 정보, 지식 및 경험의 교환을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로서 「e-confidence」포럼을 온라인상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EEJ-Net」 (European Extra-Judicial Network)이라는 유럽지역의 비사법적 네트워크 형성을 추구하여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³³⁾

IV. EU 입법에 따른 한국의 법·제도적 대응전략

1.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교훈

지금까지 최근 EU에서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입법의 주요내용과 쟁점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전자상거래의 입법 및 논의는 EU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입법이 되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UNCITRAL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모델법의 형식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고 이미 시행하고 있다.

EU 입법의 가장 큰 특징은 EU 관계당국의 역내에서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막대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이 노력이 주로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과 서비스의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의 확보

32) 전게서, p.80.

33) 전게서, p.80.

둘째, 소비자의 철저한 보호

셋째, 전자기술의 현재의 수준에 구애되지 않고 장래의 한층 발전을 예상한 유연한 대응 이들 시책은 EU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행정·입법을 미국 등과 비교해도 전자서명의 증명서 비스 제공자에게 증명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등 독특하고 매우 의의가 깊은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그 속성상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서는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 EU에서 보고 배워야 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2. 한국의 대응전략

1) 기업의 대응전략

앞서 고찰한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의 특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전략과 정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의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서 면밀한 법제도의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은 첫째, 민간차원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규율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정부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원자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기업도 자율적인 규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EU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의 자율규제의 노력은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민간자율규제의 노력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와 기업 간 효율적인 분쟁해결에도 유의해야 한다. 더욱 더 유의해야 할 부분은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 안의 마련이다. 한국 기업들이 소비자의 신뢰 구축에 성공할 때 전자상거래 발전의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민간자율규제가 요구된다.³⁴⁾

둘째, 기업은 국제적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규범형성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에서의 민간기업의 의견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세계기업협의체(Global Business Dialogue on Electronic Commerce: GBDe)등을 통하여 제기되고 교류되고 있다. GBDe에는 AOL, Time Warner Group의 CEO를 비롯하여 총 70개 기업의 CEO가 참여하

34) 전계서, pp.220-221.

는 등 IT 관련 선도기업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서 민간자율규제의 확대 움직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기업으로는 한국통신, 중앙일보, LG-EDS 등 3개 기업이 대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제사회와의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GBDe 등 국제간 협의체에 한국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³⁵⁾

또한 최근의 상업적인 전문 전자무역(Electronic Trade) 시스템인 SWIFT와 TT Club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BOLERO(Bill of Lading for Europe,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³⁶⁾와 세계무역센터협회 등에 의한 TradeCard³⁷⁾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국내 관련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또는 제휴 등을 통해서 수용 또는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³⁸⁾

2) 정부의 법·제도적 대응전략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으로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법·제도의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다.

(1)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지침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등에서 부처간 혼란으로 인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법들이 다음과 같이 상호 보완적이지 못하고 모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①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서명을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³⁹⁾,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⁰⁾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공통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와 ‘전자서명의 진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전자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법이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35) 전게서, p.220.

36) Bolero는 1994년 6월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 해상운송회사,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무역거래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전자메시지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교환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7) TradeCard는 다수의 정보통신 관련업체 및 금융기관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개발된 전자무역방식으로 전용통신망 및 인터넷을 통해 선적관련 서류의 전자전송은 물론 무역금융 및 보험, 대금결제, 물류 등 수출입 전과정을 자동화 한 것이다.

38) 이성봉·심상열·왕중식,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p.38-45.

39)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5호.

40) 전자서명법 제2조 2호.

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전자서명법에서 기술발전 변화의 폭을 미리 속단하여 전자서명의 범위를 디지털서명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법제도에 의한 전자거래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게 된다.

② 전자서명법은 문제 발생시 배상책임과 한계를 놓고 분명한 명시가 없다는 점은 앞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다. 또 행자부나 금감원, 그리고 민간인증기관간 인증업무의 차별성과 업무준칙 등이 아직 역할분담이 안되어 있다는 것도 전자서명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③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간의 중복성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와 17조는 전자서명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역할 및 관리등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문서 및 서명의 법적 효력, 개인정보보호 등의 상당부분에서 양 법이 중복된 조항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④ 전자상거래 법·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자자금이체법」이 제정되지 않은 점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모든 전자상거래 관련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합, 연계 논의되고 있고 이 중 「전자자금이체법」이 전자상거래법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결국 거래는 자금의 흐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자금이체법」의 중요성은 당연하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과 같이 상호 보완적인 입법목적에 갖고 있는 법안들은 상당부분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전자자금이체법의 경우처럼 제정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 체계상 대통령령에 의한 독립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정보체제의 조기구축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⑤ 정보통신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정보수집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그러나 공정위의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서는 사업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거래를 할 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제4조 3항 다호). 따라서 만약 14-18세 청소년이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근거하면 동 청소년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수집행위를 규제할 수 없지만,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근거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2000년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법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동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률의 규정이 입법·예고된 대로 시행된다면, 공정위의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제4조 3항 다호는 동 지침 제12조 제4호의 통신망법준용 규정에 따라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통일되게 된다. 결국 두 정부부처 지침간의 충돌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의해 해소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법률간 모순의 단적인 예가 된다.⁴¹⁾

41) 박노형, 전계서, p.249.

(2)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부간 혹은 비 정부간 국제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자상거래규범은 어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규범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기업도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소비자보호 정책의 강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는 비대면성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비록 전자상거래 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구매방법에서 편리성을 주는 이점을 가지지만, 이러한 이점들은 상품 및 서비스의 보다 안전한 구입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사기나 기만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관련되지 않아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면 전자상거래는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

(4) 규제의 개혁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의 정비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나 절차 등 부적절한 제한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의 법적 기반 위에서 정보인프라의 구축·정비 등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결국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정책적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EU에서의 입법 동향과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EU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의 특징은 EU 관계당국의 역내에서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들의 노력은 첫째,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과 서비스의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의 확보, 둘째, 소비자의 철저한 보호, 셋째, 전자기술의 현

재의 수준에 구애되지 않고 장래의 한층 발전을 예상한 유연한 대응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EU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행정·입법 중 가장 의의가 있고 독특한 특징은 전자서명의 증명 서비스 제공자에게 증명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의 교훈에서 보고 배워야 하는 점이 많다고 본다.

전자상거래의 입법 및 논의는 EU 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고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그 속성상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서는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및 개인정보보호지침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등에서 정부 부처간에 상호 조율이 되지 않아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부처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관련법들의 중복이나 모순의 문제 등은 상호 통합 혹은 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⁴²⁾

전자상거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전자상거래법 만으로는 규율 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일관된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제통일규범의 마련 등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법제 동향을 신속히 수용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의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노형,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동향과 내용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0.12.
- 박복재, “EDI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관계된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1998.12.
- _____, “선하증권의 EDI화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19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1994.9.
- _____, “전자상거래 관련법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12.
- 손찬현·윤진나,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
- 유진식,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 이성봉·심상열·왕중식,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5.
- 한국무역협회,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방향」, 1997.10.

42) 자세한 것은 다음 논문을 참조 할 것. 박복재, “전자상거래 관련법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12.

- 한국법제연구원, 「전자거래 관련 법제 정비방안」, 2001.6
- 新堀 聰, 「現代貿易賣買」, 同文館, 2001.
- Whinston, Andrew B., *The Economics of Electronic Commerce*, Pearson Education, 1997.
- Commission welcomes new legal framework to guarantee security of electronic signature, 30 November 1999,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media/sign/99-915.htm
- Gilmore, Dan, *Tide seems to be Turning Against UCITA Measure*, Computer World, June 25, 2001.
- Turban, Efraim, *Electronic Commerce*, Pearson Education, 2000.
- European Commission, *Electronic Commerce : Commission welcomes final adoptions of legal framework Directive 3*, 4 May 2000.
- Winn, Jane K. & Benjamin Wright, *Law of Electronic Commerce 6-33*, 4th ed. 2001, Aspen Law & Business, New York.
- Laudon, Kenneth C. & Carol Guercio Traver, *E-Commerce : business. technology. society*, Addison Wesley, 2001.
- Bowman, Lisa M., *UCITA drawa legal fire*, August 2, 2001.
- Chissick, Michael & Alistair Kelman, *Electronic Commerce : Law and Practice*, 2d ed. 2000, Sweet & Maxwell, London.
- Minutes of the First Meet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NCCUSL, August 9, 2001, Greenbrier, White Sulphur Springs, West Virginia.
- NCCUSL, A Few Facts About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NCCUSL, Press Release : *Uniform Law Group Wraps up Meeting*, August 16, 2001.
- NCCUSL, Summary,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 Thibodeau, Patrick, *UCITA goes back to the drawing board*, Computer World, August 3, 2001.
- Political agreement on a common position of the council on a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 22 April 1999,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media/sign/composen.htm
- WIPO, *Basic Proposal for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the Treaty on Certain Question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o Be Consider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CRNR/DC/4. Geneva, 1996.
- WIPO, *Basic Proposal for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the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Databases To Be Consider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CRNR/DC/6. Geneva, 1996.
-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1998.
- WTO, G\C\W\128(1998, 11. 5),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 WTO, Job No. 4289(1999. 7. 20), Draft Progress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 WTO, S\C\M\37(1999. 6. 20),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22 and 24 June 1999.

WTO, S\C\W\115\Rev. 1 (1999. 7. 20), Progress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WTO, *The WTO Negotiations on Basic Telecommunications*, mimeo, World Trade Organization, Geneva, 1997.

WTO, WT/L/274, 1998. 9. 30. Work Program of Electronic Commerce

WTO, WT/MIN(98)/DEC/2, 1998. 5. 25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O, WT\DS75R, WT\DS84\R(1998. 9. 17), Korea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WTO," 1999.

Muscovitch, Zak, *Taxation of Internet Commerce*, 1996 Available at www2.magma.com

<http://www.iid.de/rahmen/iukdgeb.html>

<http://www.pub.whitehouse.gov/uri-res/12R?urn:pdi://oma.eo.../6.text>

http://www.un.or.at/uncitral/sessionss/wg_ec/wp-71.htm

<http://www://europa.eu.int/comm/internal-market>

http://europa.eu.int/comm/consumers/policy/developments/acce_just/acce_just06_en.pdf

http://europa.eu.int/comm/consumers/policy/development/dist_sell/dist02_en.htm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media/sign/99-915.htm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media/sign/composen.htm